

2022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257
----------	------

2022년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2. 5.30.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2. 6. 3.

4. 상정일자 :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2. 6. 17.)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 의안번호 제3257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 2021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재무활동'의 61.5% 규모인 97억 6천 7백만 원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가 220억 4백만 원에서 316억 4백만 원으로 96억 원 증가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2억 7천 3백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으로 1억 6천 7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예치금'이 158억 7천 2백만 원에서 256억 3천 9백만 원으로 97억 6천 7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3257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2.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액되어 2022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요내용

가.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결과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단위:백만원)

구분	계	비용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2021 계획	35,110	12,956	150	22,004
2021 결산	35,987	4,305	78	31,604

나.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예치금회수액이 당초 22,004백만원에서 31,604백만원으로 9,600백만원 증가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273백만원에서 440백만원으로 167백만원 증가하였음

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예치금(재무활동)를 당초 15,872백만원에서 25,639백만원으로 9,767백만원 증액하여 당초 편성 대비 20% 초과 변경하고자 함

라.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A)	변경(B)	증감(B-A)
계	22,277	32,044	9,767
이자수입	273	440	167
예치금회수	22,004	31,604	9,600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A)	변경(B)	증감(B-A)
계	22,277	32,044	9,767
비용자성 사업비	6,305	6,305	-
예치금	15,872	25,639	9,767 (61.5%)
기본경비	100	100	-

3. 검토내용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 97억 6,700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96억원)와 이자수입(1억 6,700만원)에 각각 반영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예치금(97억 6,700만원)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재원을 여유재원으로 지출계획 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관련 법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 관련 기준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수입계획)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지출계획)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재무활동(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61.5%, 97억 6,7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

〈표 3-1〉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정책 사업 /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당 초 (A)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지출합계	22,277	32,044	9,767	43.8
남 북 교 류 협 력 추 진	6,305	6,305	-	-
재 무 활 동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15,872	25,639	9,767	61.5
보 전 지 출 (남북교류협력기금)	15,872	25,639	9,767	61.5
여 유 자 금 예 치	15,872	25,639	9,767	61.5
행 정 운 영 경 비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100	100	-	-

※ 자료근거 : ①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2. 5.30) 재구성

○ 아울러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액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 동 기금의 관련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동 기금은 운용계획 변경안을 “비용자성사업, 기본경비, 예치금”으로 기재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인 ①**남북교류협력 추진**, ②**재무활동**, ③**행정운영경비**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 바,

- 지난 '22년 4월에도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처럼 의회에 제출된 다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정책사업명을 임의로 기재한 사례가 지적된 바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에도 정책사업명을 편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부대의결 : 「생략」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2022. 6. 17.)

2022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3257
----------	------

제출년월일 : 2022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액되어 2022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요내용

- 가.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결과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단위:백만원)

구분	계	비용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2021 계획	35,110	12,956	150	22,004
2021 결산	35,987	4,305	78	31,604

- 나.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예치금회수액이 당초 22,004백만원에서 31,604백만원으로 9,600백만원 증가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273백만원에서 440백만원으로 167백만원 증가하였음
- 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예치금(재무활동)를 당초 15,872백만원에서 25,639백만원으로 9,767백만원 증액하여 당초 편성 대비 20% 초과 변경하고자 함

라.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A)	변경(B)	증감(B-A)
계	22,277	32,044	9,767
이지수입	273	440	167
예치금수회	22,004	31,604	9,600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A)	변경(B)	증감(B-A)
계	22,277	32,044	9,767
비용자성사업비	6,305	6,305	-
예치금	15,872	25,639	9,767 (61.5%)
기본경비	100	100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정책팀 한재리 (☎ 2133-8665)